

## ◎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3-223호

「도로법」 제66조(점용료의 징수 등), 동법 제69조(점용료의 강제징수)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(강제징수)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 고지서와 납부최고서 발송 및 이에 따른 재산(금융재산)의 압류를 실시하였으나, 반송 등의 사유로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규정에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하고자 합니다

2023년 08월 28일

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

###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

1. 공고사유 : 체납자 재산 압류 후 반송 등의 사유로 압류통지서 송달불가

2. 공고기간 : 2023.8.28. ~ 2023.9.11.(15일간)

3. 공고내용

가. 「도로법」 제69조(점용료의 강제징수)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(강제징수) 규정에 의거 재산(금융재산) 압류 절차 이후 압류통지서 공고

나. 압류 이후 6개월 내 체납된 도로점용료 미납시 채권추심 실시 예정 공고

다.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

- 제출기한 : 공고기간 내

- 제출내용 : 의견진술서, 증빙자료

- 제출방법 :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및 팩스(054.260.2529), 등기우편 이용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(☎054.260.2592)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###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및 압류 물건 목록

순번	이름	실명번호	주소	압류물건	비고
1	(주)해맞이주유소	506-81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	19개 시중은행 금융재산	
2	근일정공(주)	505-81-*****	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반구대로	19개 시중은행 금융재산	
3	동산산업 김승○	505-14-*****	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신답길	19개 시중은행 금융재산	

끝.